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94
----------	------

2018. 2. 27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 10. 30 우미경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7. 11. 1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8.2.27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우미경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16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

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미경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이사회) ① (생략)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<단서 신설>	제16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 . <u>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</u>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이사회 구성의 적용례)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- 현재 SH공사 업무에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게 되는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2명은 근로자이사)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, 이 개정조례안에 따를 경우, 특정성별 이사가 최소 6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임.
- 「지방공기업법」 상 지방공사의 사장과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,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임면권은 사장이 가지는 바¹⁾, 사장의 임명과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구성은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권한으로 공사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며, 근로자이사 역시 근로자의 투표

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2항 및 제7항

로 선정하는 선출직(임면권은 시장)²⁾으로 그 성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하겠음. 따라서,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총 9인 이내(상임이사 3인, 비상임이사 6인)의 이사 중에서 6명 이상을 특정성별로 할당 임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.

<SH공사 이사회 구성>

분류	직위	인원	임면권자
	계	14인(이내)	-
상임이사	사장	1인	시 장
	상임이사	3인	사 장
비상임이사	(당연직) 市 주택건축국장	1인	시 장
	(당연직) 市 재정기획관	1인	시 장
	비상임이사	6인	시 장
	근로자이사	2인	시장 (근로자선출)

- 한편, 대법원에서 “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·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·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·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·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다(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추93 판결 참조)”라고 판시한 바 있어,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공기업법령과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.

2)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 및 「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」 제10조제4항

- 그러나, 이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³⁾ 및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6조의 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, SH공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특정 성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되며, 성별 균형 노력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임.

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약 및 현실적 실현 가능성의 한계⁴⁾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대로 할 경우,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로 조례 시행 후 새로 임명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면, 현재 이사회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(붙임 참조)되어 있어 새로 구성되는 이사는 모두 여성을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으로 인사운영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음. 이에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사회의 중장기 성별 구성 계획을 수립·공개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3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) 2016년말 진행한 비상임이사(3인) 공모에서 총 13명이 지원하였으나 여성은 지원하지 않았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
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회 구성의 적용례)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
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
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이사회) ① (생 략)</p> <p>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	<p>제16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. <u>다만,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 록 노력한다.</u>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